

2026년 제5회 의왕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

2026년 제5회 의왕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1일
의왕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 (근무부서)	채용등급	채용 인원	근무기간	직무내용
계	1개 분야	1명		
진료의사 (보건행정과)	지방의무사무관 (일반임기제)	1명	1년 (주40시간)	○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 및 상담 ○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관련 진단 ○ 예방접종 예진 및 환자 진료 ○ 만성질환자 관리 ○ 건강증진사업 진료 및 상담 ○ 기타 보건소 진료 관련 시장이 지정 하는 업무

※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총 5년의 범위 내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

2. 근거법령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, 제31조
- 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4, 7
- 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운영지침」 (행정안전부 예규)
- 라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마. 「의왕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제16조 제8항, 별표 5의3

3. 응시자격

가. 공통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 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응시연령: 18세 이상
- 거주지 · 성별: 제한 없음

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▶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채용분야	자격기준
진료의사 (지방의무사무관, 일반임기제)	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,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[직무분야 실무경력] - 공공 또는 민간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업무에 근무한 경력

-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**경력 인정범위**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, 담당업무가 명시된 **경우에 한하여 인정**(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- 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**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, 한시임기제는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- ※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
예)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으로 인정(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)
- ※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(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)

4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(자격·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)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(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토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정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***면접시험 평정요소**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)

1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2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3.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4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***면접시험 불합격 기준**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0조의3)

1.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"하"(미흡)로 평정하였을 때
2.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"하"(미흡)로 평정하였을 때

※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,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5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: 2026. 11. 4.(수)~11. 6.(금) / 3일간

나.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○ 방문접수(대리 접수 가능)

- 접수시간: 09:00~18:00 [공휴일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- 접수장소: 의왕시청 총무과 인사팀(본관 2층)

- 응시수수료

▶ 5급(가급): 10,000원 상당의 의왕시 수입증지

*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서류 안내(기준일: 원서 접수일 현재)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: 차상위계층 증명서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: 한부모가족 증명서
4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: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5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: 가족관계증명서

※ 총무과 채용담당자에게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의왕시청 민원실 1~2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날인(방문접수자)

○ 등기우편 접수

-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

-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(“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” 사용불가)

- 우편봉투 겉면에 ‘2026년 제○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’ 표기

-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송부 예정

※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

- 우편주소: ☎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, 의왕시청 총무과 인사팀

6. 시험 일정

구분	기간
응시원서 접수	2026. 11. 4.(수)~11. 6.(금)
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	2026. 11. 19.(목)
면접시험	2026. 11. 27.(금)
최종합격자 발표	2026. 12. 4.(금)

※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의왕시 홈페이지(www.uiwang.go.kr) [채용공고]란에 공고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

7. 보수 수준 및 복무

가. 보 수

-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**연봉하한액**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5호)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

임용예정분야	임용직급	상한액	하한액
진료의사	지방의무사무관 (일반임기제)	-	연 69,663천원

-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제35조에 따라 연봉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책정 가능
- 연봉 외 수당(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, 시간외근무수당 등)은 예산범위 내에서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나. 복 무

- 「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따름

8. 제출서류

<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, 순서대로 정렬>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응시원서 1부 <서식 1>	필수
2	이력서 1부 <서식 2>	필수
3	자기소개서 1부 <서식 3>	필수
4	직무수행계획서 1부 <서식 4>	필수
5	응시자 경력사항 기술서 1부 <서식 5>	필수
6	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<서식 6>	필수
7	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 <서식 7, 8>	필수
8	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-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- 대학원 수료 이상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	필수
9	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1부	자격증 해당자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0	<p>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체적인 담당업무,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(전일, 주00시간) 등이 명시되고, 발행기관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※ 전일제의 경우에도 전일제 또는 주40시간 명시되어야 함 ※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)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으로 인정(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) -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, 기간, 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확인서 또는 업무분장표 등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,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- 회사의 폐업의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와 폐업사실증명 등의 폐업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,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제출된 증명서류로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	필수
11	<p>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,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제출한 경력 내용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(급여입금내역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※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(1577-1000)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	필수
12	<p>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, 외국어능력·정보화 자격증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	해당자
주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-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-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권고 	

9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, 원서 접수기간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- 의왕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권고합니다.
- 불합격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결격사유, 임용포기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,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.
-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가 예상됩니다.
- 동일 기관에서 근무 중인 자가 선발될 경우 기존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신규 임용처리되는 것으로, 임용 요청 2주 전까지 면직 처리 등을 완료하여 결원 발생 부서에서 지체없이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.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 점수(결과)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를 공개합니다.

-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.
-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,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의왕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절차 및 시험 문의: 총무과 인사팀(☎ 031-345-2123)
-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
 - 진료의사: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(☎ 031-345-3885)